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별표 1>중 "숙박료(1야당)"를 "숙박비(1야당)"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1중 "국외여비규정<별표 2>"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